

공급개요

- 공급위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312-75번지 일대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4층, 지상 45층, 2개동 총 404세대 중 일반분양 171세대

기관추천 특별공급 공급세대수

※ 표기 : **당첨예정자** / 괄호 : (예비대상자)

주택형 및 약식표기	기관추천 배정 세대수	장애인			국가 유공자 등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복무군인	중소기업 근로자	TOTAL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059.8902A	2	1 (9)	-	-	-	-	1 (9)	-	2 (18)
059.9055B	1	1 (9)	-	-	-	-	-	-	1 (9)
074.9117A (74A1, 74A2)	2	1 (9)	-	-	-	-	1 (9)	-	2 (18)
084.8554A (84A1, 84A2)	-	-	-	-	-	-	-	-	-
084.0000B (84B1, 84B2)	6	1 (9)	1 (9)	-	1 (9)	1 (9)	1 (9)	1 (9)	6 (54)
084.0000C (84C1, 84C2)	4	-	1 (9)	1 (9)	-	-	1 (9)	1 (9)	4 (36)
109.8652A (109A1, 109A2)	-	-	-	-	-	-	-	-	-
TOTAL	15	4 (36)	2 (18)	1 (9)	1 (9)	1 (9)	4 (36)	2 (18)	15 (135)

당첨예정자 : 기관에서 "당첨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청약 신청으로 "당첨자"가 되는 자

예비대상자 : 기관에서 "예비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청약 신청 이후 특별공급 미달 시 추가로 "당첨자" 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자

- ※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으로 면적 및 배정대상 세대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대상자 추천은 주택형별로 배정된 세대수(예비대상자 포함)까지 가능하며, 당첨자 선정 방법은 해당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릅니다.
- ※ 예비대상자 추천 여부는 해당기관에서 정하고, 예비대상자 추천 시 별도의 순번은 부여하지 않습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예정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 신청일에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을 통해 청약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구분	분양일정	비고
입주자 모집공고	2026.06.12 (금)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드파인 아르티아 홈페이지 (<a href="https://altia.skdefine.com">https://altia.skdefine.com</a>)</li> <li>• 분양문의 : 1644-4041</li> <li>• 견본주택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9-19, 드파인 아르티아 견본주택</li> </ul>
특별공급 청약접수	2026.06.22 (월)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 / 09:00~17:30)</li> <li>• 견본주택 방문접수 (10:00~14:00까지 / 만 65세 이상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자만 가능)</li> </ul>
당첨자 발표	2026.07.01 (수)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li> </ul>

- 현재 분양 승인 전으로 분양가격 및 분양조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이후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분양 승인 일정에 따라 분양일정 (특별공급 청약접수일, 당첨자 발표일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정변경 시 재안내 예정)
- 본 청약안내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025.10.31 기준으로 제작되었으며, 기타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 및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이내



- 1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2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 경과되고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경우 입주자저축 불필요)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제대 군인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장애인	중소기업 근로자
국가보훈부 서울남부보훈지청 복지과	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서울시청 장애인 자립지원과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인천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국가유공자 / 보훈대상자 또는 그 유가족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른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에 따른 중소기업 근로 종사자

### 청약신청 전 유의사항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당첨예정자 : 해당 기관에서 당첨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다른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청약 후 당첨자가 되는 분
  - 예비대상자 : 해당 기관에서 예비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청약하더라도 특별공급 미달 시 추가로 당첨자가 될 수 있는 분 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
-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 신청일에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을 통해 청약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기준 [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추천 기관부서

구분	해당기관	연락처
국가 유공자 등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보훈부 서울남부보훈지청 복지과	02-3019-2369
10년 이상 복무군인	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02-2225-6378
장애인	서울시청 장애인 자립지원과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인천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지자체 : - 관할 시군구 장애인 담당부서 - 읍면동 주민센터
중소기업 근로자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02-2110-6323

기관추천 특별공급 공급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구성원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 외국인은 주민등록상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또는 부적격 판명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입주자저축 자격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추천대상자	입주자저축 구비여부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	필요 없음
장기복무제대군인, 10년이상 복무군인, 중소기업 근로자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지역별 예치금 이상인 자

-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
-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입주자저축 예치금액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 만원 이상	250 만원 이상	200 만원 이상
전용면적 135㎡ 이하	1,000 만원 이상	700 만원 이상	400 만원 이상

-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합니다.
-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합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무주택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에는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까지 포함합니다.

[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  
(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분양권 등
-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의2, 제23조 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또는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 12. 11.> 부칙 제3조)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 (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판단합니다. (※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판단합니다.)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 주택 소유로 판단합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기준 확대 (2024.12.18. 개정)

청약자가 속한 세대가 아래사항에서 정하는 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주택 /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전용 60㎡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 **전용 85㎡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 등
  -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 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 등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 제9호 가목	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 제9호 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방식 및 기준

- ① : 각 주택형별 특별공급 종류별로 입주자를 선정
- ② : ① 번에서 입주자 선정 후 남은 세대가 있는 경우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③ : ② 번 이후에도 낙첨자가 발생한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특별공급 세대수의 90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
- ④ : 특별공급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1,0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하고, ② 번 선정 후에도 잔여 세대가 있는 경우 일반공급 세대수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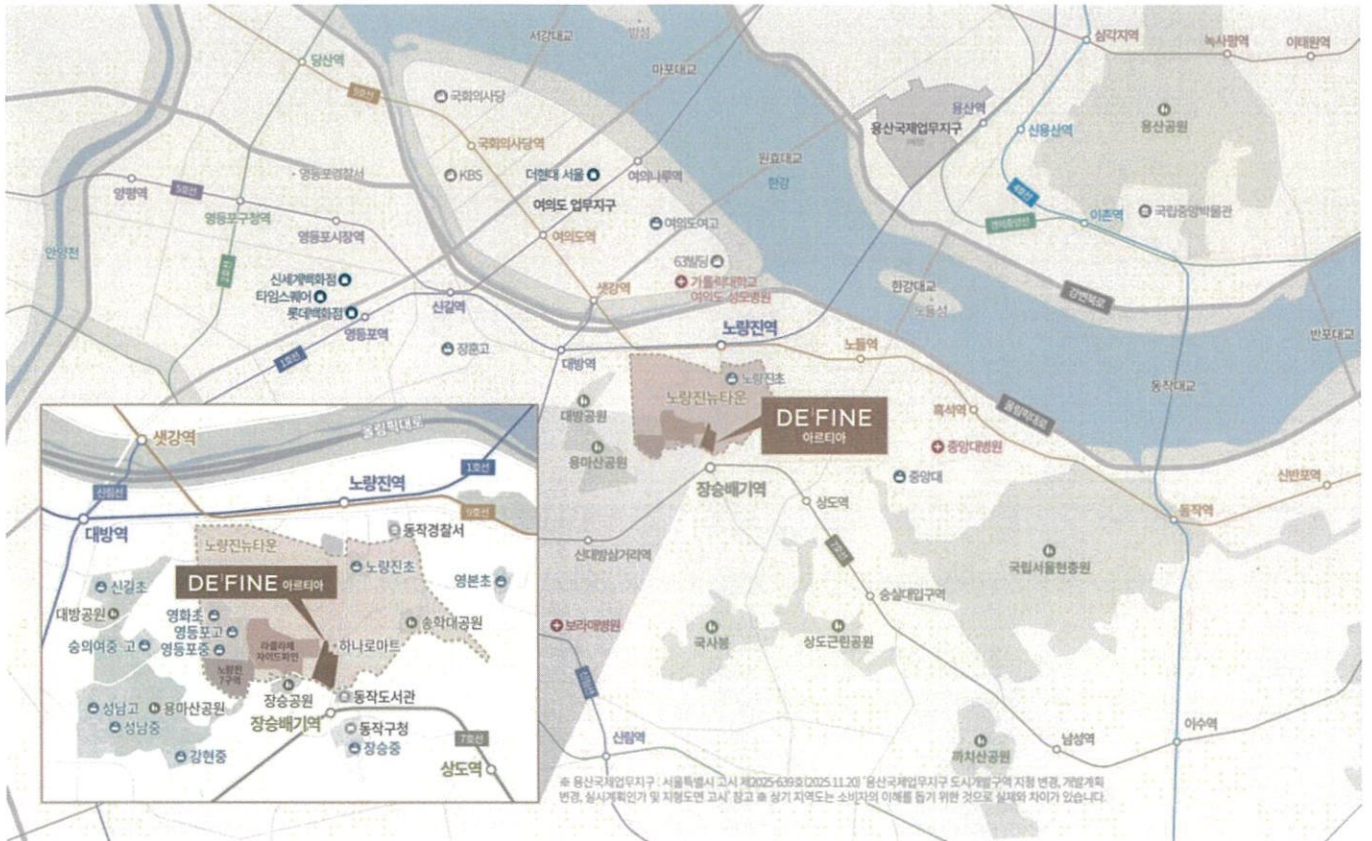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부적격 당첨자 및 미계약 동·호수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 기타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자격확인서류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자인 특별공급 대상자는 분양사무소 청약 접수 시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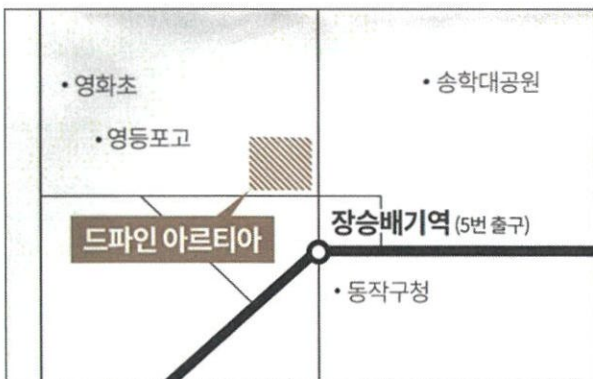
구분	해당서류	대상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공통서류	청약통장순위 확인서	본인	-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내역 발급 또는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 확인서 발급 (www.applyhome.co.kr) ※ 기관추천 특별공급 -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의 경우 제외 ※ 인터넷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주민등록표등본		- 세대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전체 포함으로 발급
	주민등록표초본		-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성명/관계 등을 전체포함으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과의 관계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혼인관계증명서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본인 발급용)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추가서류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대리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본인 발급용)
접수 시	대리인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상세 발급분]에 한하며 상기 서류 미비 시 청약 및 계약이 불가합니다.
- \* 건본주택 방문 청약신청자(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는 청약 신청 시에 상기 서류 및 청약통장 가입확인서(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경우 불필요)를 포함하여 제출해야 하며, 인터넷 청약신청자는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해 계약체결 전 서류 제출기간에 제출해야 합니다.
- \* 청약자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공통/추가서류 외에 대리인 접수 시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 자격확인을 위해 사업주체는 기본 자격확인서류 외 추가의 별도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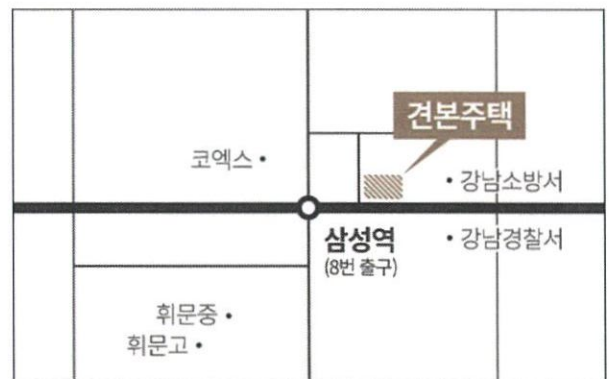
위치도



현장 및 건본주택 주소지



현장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312-75



건본주택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9-19

DE'FINE

아티아

1644-4041



총 404세대 | 일반분양 171세대 59㎡ · 74㎡ · 84㎡ · 109㎡ |

※ 본 안내문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인쇄 및 편집과정에서 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내용의 일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붙임자료는 입주자모집공고 시까지 변경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고, 입주자모집공고 시 확정되는 홍보물 등으로 단지배치도 및 평면도 등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